

03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6 호)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

Q 대기업 소속 단위사업장의 규모가 300만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집단 소속회사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기업집단정보포털 ▶ 대규모기업집단 ▶ 지정현황 ▶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Q 지원한도 금액이 사업장(연합체) 단위인가요? 프로그램단위인가요?

> 지원한도는 사업장(연합체) 단위 기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숫자와는 별개로 사업장(연합체) 단위 한도입니다.

Q 단체 소속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있나요?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단, 신청상의 편의를 위해 연합체의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연합체의 경우도 300인 미만 사업장들이 모여진 연합체가 대상입니다.

Q Type1-2(협력업체 지원형)인 경우, 규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① 모기업 규모가 300인 이상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활동만 대상이 됩니다.

※ 모기업이 300인 이상이므로 모기업 근로자에 대한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기업은 관리를 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② 모기업 규모가 300인 미만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모기업이 300인 미만이므로 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활동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

04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접수기간 및 기타

■ 접수기간

· 2015. 2월 ~ 재원 소진 시 까지(연중 접수)

■ 제출서류

·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서(제안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문의처 및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Tel : 02-6711-2854	(서울, 강원)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Tel : 051-520-0584	(부산, 경남, 울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우산동,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Tel : 062-949-8755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북지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Tel : 032-510-0534	(인천, 경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20층 Tel : 053-609-0542	(대구, 경북)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문지동) 2층 Tel : 042-620-5633	(대전, 충북, 충남)

※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비용지원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안내

건강한
근로자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장

- ① 최근 5년 이내 작업관련성질환자 발생사업장(신청일 기준)
- ② 일반건강진단결과와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다발 사업장
- ③ 감정업무 수행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사업장
- ④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 다수 발생사업장
- ⑤ 야간, 교대작업 근로자 다수 근무사업장
- ⑥ 취약계층(장년, 여성, 비정규직) 다수 근무사업장
- ⑦ 지역본부장(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01 신청요건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 ▶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있는 경우
 -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 협력업체 지원형(Type1-2)인 경우
 - 상호협의를 하여 모기업에서 신청

연합체

- ▶ 기 구성되어 있는 업종(지역)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
 - 구성된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
- ▶ 본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업종(지역)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
 - 구성된 사업장 중 대표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

Q 형태별 건강증진활동 지원모델

지원모델		구성의 예	추진방법
Type 1 (사업장)	Type 1-1 (사업장 단독추진형)	300인 미만 단위 사업장	자체 또는 외부전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추진
	Type 1-2 (협력업체 지원형)	모기업과 동일지역에 속한협력업체 사업장	
Type 2 (연합체)	Type 2-1 (유사업종 연합형)	택시조합, 화물자동차조합, 음식점협동조합 등의 소속 사업장 등	
	Type 2-2 (지역 연합형)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지역단위의 중소 기업단체 소속사업장	

02 지원내용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

모든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업무적요인과 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질환예방활동에 한함

- ①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
- ② 감정업무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활동
- ③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 ④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활동
 -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⑤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상담 및 업무적합성 평가

공단 지원사항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Q 지원한도

구 분	사업장(연합체) 규모		
	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지원한도	160 만원	700 만원	2,000 만원

※ 300명 이상은 연합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기자재 임차료, 장소임차료, 보조제 구입비(금연보조제 등), 외부 전문교육과정 참가비, 교재 제작비, 홍보물제작비 등 '예산단가(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항목

※ 자산취득비용, 현물제공비용 및 재료비 구입등에 발생하는 부가 가치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예산단가(집행) 가이드라인' 참조